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145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목포시 D[도로명주소 : 목포시 E] 지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

443.96㎡(내역 : 소매점 225.56㎡, 노래연습장 218.40㎡)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, 1의
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17.24㎡를 인도하고,

나. 13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선내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
1,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노연주

별지